##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9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이용호·김윤덕·소병훈

정성호 · 한병도 · 이상헌

민병덕 • 이채익 • 김상훈

양정숙 · 이용빈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 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그룹홈에서 지내던 아동들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던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임. 위법 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미성년자인 아동들이 입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아동을"을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
지, 시설의 폐쇄 등) ① (생	지, 시설의 폐쇄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2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	
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	
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	
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u>아</u>	
<u>동을</u>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하고, 해당아동의 의견을 반영
를 하여야 한다.	<u> हो व</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